

1.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시행 2019. 7. 16.]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
- 사업주는 조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내리면 사장 처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산업안전보건법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정부의 책무 명시

2. 근로시간 [시행 2019. 4. 1.]

〈기 존〉

평일 40시간
평일 연장 12시간
주말/휴일 16시간
= 68시간

〈시 행〉

평일 40시간
평일/주말 12시간
= 52시간

〈연장 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1주 최대 12시간
초과 금지

〈휴일 근로〉



휴일에 이뤄지는
근로, 해당 시간
근로에 대해
임금의
1.5배 지급

〈야간 근로〉



오후 10시~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해당 시간
근로에 대해
임금의 1.5배 지급

Together 캠페인



Health : 과로사 예방을 통한 **건강한** 안전일터

Happy :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통한 **행복한** 안전일터

Hope : 자살 예방을 통한 **희망찬** 안전일터

건강 상담전화

☎ **1899-0222**

18세부터 99세까지 꼭 두드리세요!

Together 캠페인



건강하고 행복한 안전일터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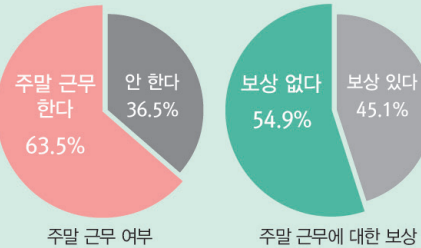


안전일터 문화조성



직장인 64%, 주말 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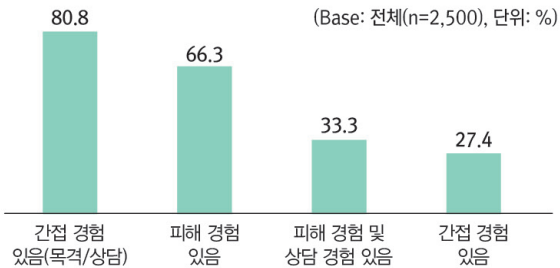
(직장인 747명 조사, 출처: 사람인)



과거 5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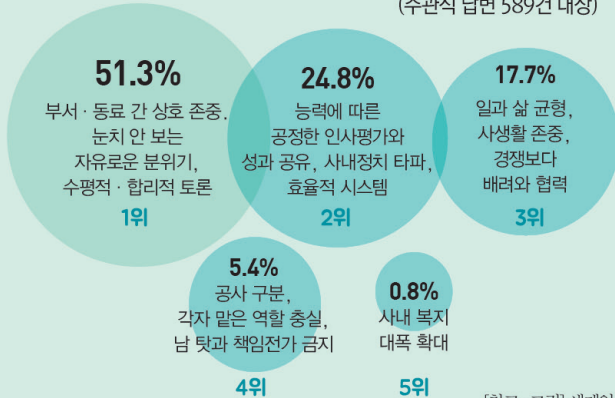
(2,500명 조사)

(출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와 제도적 규율 방안 [2017] (김근주, 이경희))



직장인들이 희망하는 직장문화유형별 순위

(주관식 답변 589건 대상)



[참고-그림] 세계일보

“대리님이 일을 안해요...” 업무과중 갑질로 우는 직장인들 (2018.11.26)

건강하고 행복한 안전일터 만들기를 위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고, 훈련, 승진, 보상 등 차별하지 않는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며, 휴가 등 복지혜택을 못쓰게하며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하고, 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다.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거나 허드렛일을 주지 않는다.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거나 집단따돌림은 하지 않는다.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하지 않는다.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거나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고 다른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하지 않는다.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지 않는다.



직장인 건강관리 10대수칙

운동	금연과 절주	식생활
01 직장생활에서 계단 이용과 걷기를 생활화하기	02 담배는 절대 피우지 말고, 절주하는 회식문화 만들기	03 규칙적으로 골고루 알맞게 먹고, 야식하지 않기
수면과 휴식	직장인 건강관리 10대수칙	
04 매일 7~8시간 수면하고, 근무 시간 중에 주기적으로 휴식시간 갖기	05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받기	
건강검진	스트레스 관리	
06 건강진단과 암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기	07 하루 10분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 갖기	
"10 Health Practice For Workers"		
대인관계	근골격계질환 예방	유해요인
08 서로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 실천하기	09 작업시작 전 스트레칭하기	10 직장의 유해요인을 알고, 정확한 보호구 착용하기